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조장 정보의 게시·유통 금지 등 >
■ 부승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503호)

2026. 8.

국 방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문 성 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조장 정보의 게시·유통 금지	2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행위의 형사처벌 ...	7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부승찬의원 등 15인

나. 발의연월일 : 2026. 3. 16.

다. 회부연월일 : 2026. 3.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병역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 및 유통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외 영주권 불법·편법 취득 등 국외여행허가의 의무 위반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에만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국외여행허가를 받았으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 및 유통금지 대상에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을 포함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자원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1조의3 등).

Ⅲ. 검토의견

1.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조장 정보의 게시·유통 금지

□ 현행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 및 병역판정검사 등을 받을 사람을 대리하여 검사를 받는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유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조장 금지 정보에 국외여행허가 의무의 위반을 조장하는 정보를 포함시키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1조의3(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86조 및 제87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의3(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① ----- 제86조, 제87조제1항 및 제94조-----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86조¹⁾에서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제87조제1항²⁾에서는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현행법 제81조의3제1항³⁾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86조 및 제87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유통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⁴⁾하고 있음.

□ 한편, 현행법 제70조 제1항 및 제3항⁵⁾에서는 병역의무자로서 25세

-
- 1) 「병역법」 제86조(도망·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2) 「병역법」 제87조(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①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3) 「병역법」 제81조의3(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86조 및 제87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병역법」 제87조의2(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 제81조의3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5) 「병역법」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① 병역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2.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 ③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등은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현행법 제94조6)에 따라 징역형의 처벌이 이루어짐.

구분	처벌 대상	법정형
제94조 제1항	<u>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u>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또는 <u>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u> (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제94조 제2항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u>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u> (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	3년 이하의 징역

□ 현행법 제94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현황을 보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 중 일부는 정보통신망의 국외여행허가 의무의 위반을 조장하는 정보를 습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조장 정보에 대한

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 6) 「병역법」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①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게시·유통 금지 및 처벌조항이 없어 단속에 한계가 나타나는 상황임.

<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현황 >

(’26. 2. 28.기준, 단위: 건)

발생연도	계	유학	단기여행	어학연수	영주권	부모사유	기타
’25년	193	20	148	-	1	16	8
’24년	197	33	127	-	1	25	11
’23년	196	23	139	-	-	29	5
’22년	185	25	131	3	-	16	10
’21년	158	20	113	5	1	16	3

□ 이에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조장 금지 정보에 국외여행허가 의무의 위반을 조장하는 정보를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국외 영주권의 불법·편법 취득 등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타당성이 인정됨.

□ 또한 ‘도망·신체손상’, ‘병역판정검사 대리’ 등의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대한 단속이 시작(’24.5.)된 후 단속건수가 급격하게 줄었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망상의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행위 조장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려는 개정안의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기대됨.

< 병역면탈 조장정보 단속 현황 >

(’26. 2. 28.기준, 단위: 명)

연도	’26. 2월	’25년	’24년	’23년	’22년	’21년
건수	45	572	2,171	2,858	1,919	3,021

- 다만, 현행법 제94조에서는 제1항과 제2항을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현행법 제86조에서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행위에 대해서만 조장 정보를 금지하고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하여 조장 정보를 금지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 대해서 국방부 및 병무청은 현재 병역면탈 조장정보 수사 대상이 “도망·신체손상”이나 “병역판정검사 대리수검”에 국한되어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을 조장하는 정보는 단속에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법무부는 제94조제2항은 병역 기피·감면 목적을 묻지 않는 단순 허가의무 위반도 포함되어 면탈 의도 없는 단순 국외체류·귀국 관련 정보 안내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제1항으로 한정하거나,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로 그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보완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행위의 형사처벌

□ 현행은 병역의무자로서 허가없이 출국 또는 해외체류한 자 등에 대해서 징역형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자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①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①	-----	-----
			-----	-----
			-----	-----
			-----	-----
			-----	-----
			-----	-----
			-----	포함한다)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
		②	-----	-----
			-----	-----
			-----	-----
			-----	-----
			-----	-----
	②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제83		-----	-----

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 <u>포함한다)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u> ----- --.
---	--

□ 현행법 제70조 제1항 및 제3항7)에서는 병역의무자로서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등은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현행법 제94조8)에 따라 징역형의 처벌이 이루어짐.

- 7) 「병역법」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① 병역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2.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 ③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 8) 「병역법」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①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구분	처벌 대상	법정형
제94조 제1항	<u>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u>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제94조 제2항	<u>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u>	3년 이하의 징역

-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등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장에게,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국외여행허가신청서 첨부서류>	
1. 국제경기(전지훈련을 포함한다) 및 해외공연에 참가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학교장, 대한체육회장 또는 소속 프로경기단체법인의 추천서	
2. 연수·견학 및 문화교류의 경우: 해당 기관의 계획서 또는 허가서	
3. 국외파견 및 국외출장의 경우: 소속기관 또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국외출장 증명서 또는 파견 명령서	
4.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및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근로계약서	
5. 국외취업의 경우: 재외공관의 장이 확인한 취업증명서	
6. 질병치료의 경우: 영 제168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 또는 수술을 한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병무용진단서	
7. 유학의 경우: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8. 국외이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133호서식의 가족 거주사실 확인서	
나. 국외이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서류	
9.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국목적에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현행법 제94조에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행위로 병역의무 기피 또는 감면 목적이 있거나, 목적이 없

는 경우에도 ① 허가없이 출국 또는 해외체류, ② 허가기간 내 미(未)귀국, ③ 전시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미(未)귀국으로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국외여행허가신청서 또는 첨부서류 조작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없는 상황임.

□ 이에 개정안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자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허위·부정한 방법을 통한 병역의무 회피를 방지하여 국외여행허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함으로써 병역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병역의무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형법」 제137조⁹⁾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바, 개정안에 대해서는 중복처벌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 참고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형법」 제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형법」 상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도 불구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 개별법에서 직접적인 처벌규정을 둔 유사입법례가 있

9) 「형법」 제137조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국가유산수리업등을 영위한 자

협동조합 기본법

제117조(벌칙) ②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경우

방위사업법

제62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 또는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5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 국방부 및 병무청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행위를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정함으로써 이를 예방하고 병역의무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법무부는 ‘병역 기피·감면 목적의 거짓·부정 허가취득’(안 제94조 제1항)은 「병역법」 제86조(도망·신체손상 등)로 처벌이 가능하고 법정형도 동일하여 개정의 실익이 없으므로 제2항에만 규정하는 보완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08